

(제100회 - 총무 제1차)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안설명서

【금성단 주변 부지 매입】

영 주 시

##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27
----------	-----

제출년월일 : 2005.11.15

제출자 : 영주시장

### 1. 제안 이유

우리 시가 2006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금성단 주변 부지 매입>

##### ◦ 사업개요

- 금성단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변 부지를 매입, 숙모전 건립·주변 조경 등을 추진함으로써
- 충절 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사업계획

- 위치 : 순흥면 내죽리 64번지 외 1필지
- 매입면적 : 1,024㎡(310평)
- 소유자 : 가흥동 1385 주공@101-1205 송수근
- 사업비 : 70,000천원(평당 226천원)  
※ 공시지가 : 9,872천원(평당 32천원)
- 매입방법 : 수의계약으로 매입
- 추진기간 : 2006. 3 ~ 12월

※ 추진배경

단종 복위 운동으로 무참히 화를 입고 순흥부가 폐부되는 사건이  
있을 후 우리 지역이 총절의 고장으로 불리어 지고 있으나  
이 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금성단소만 명맥을 유지·관리되고  
있어 금성단 성역화사업 추진을 열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 금성단 성역화 사업계획

- 사업비 : 2,000,000천원 정도
  - 2005. 4월 : 금성대군 위리안치지 사업비(국·도비 360,000천원) 신청
  - 토지 매입비 : 70,000천원(시비)
  - 향후 국도비 확보 : 1,570,000천원
- 사업내역
  - 위리안치지 복원 : 2동 20평(금성대군 위리안치동 10평, 시녀4명 기거동 10평, 디오라마 등)
  - 숙모전 건립 : 1동 30평(위패 봉안 - 향사 장소로 사용)
  - 전시관 건립 : 1동 30평(단종 복위운동 관련 사료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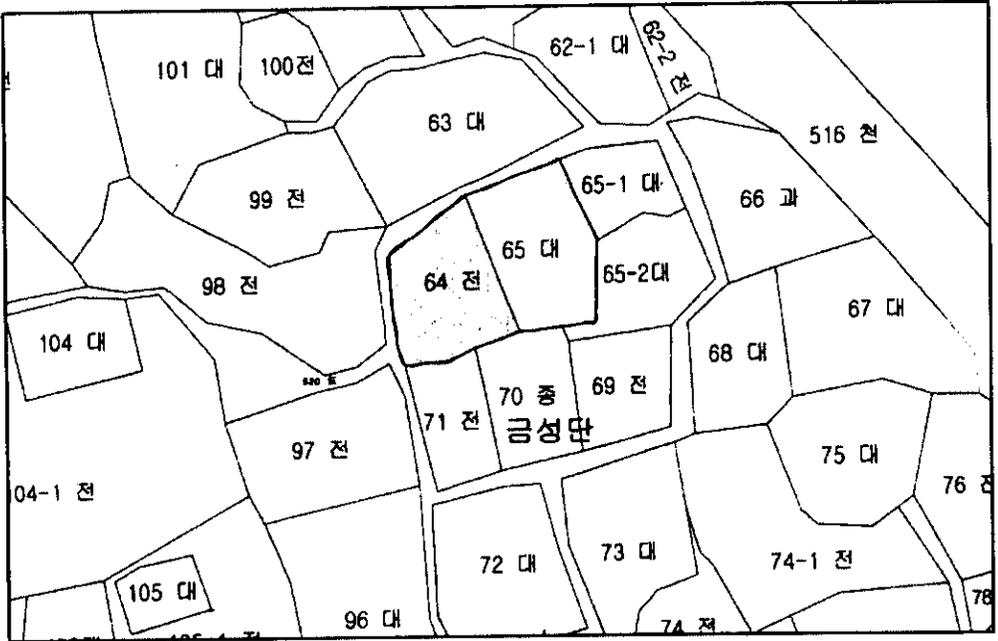
3.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붙임 참조

- 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총괄표)
- ②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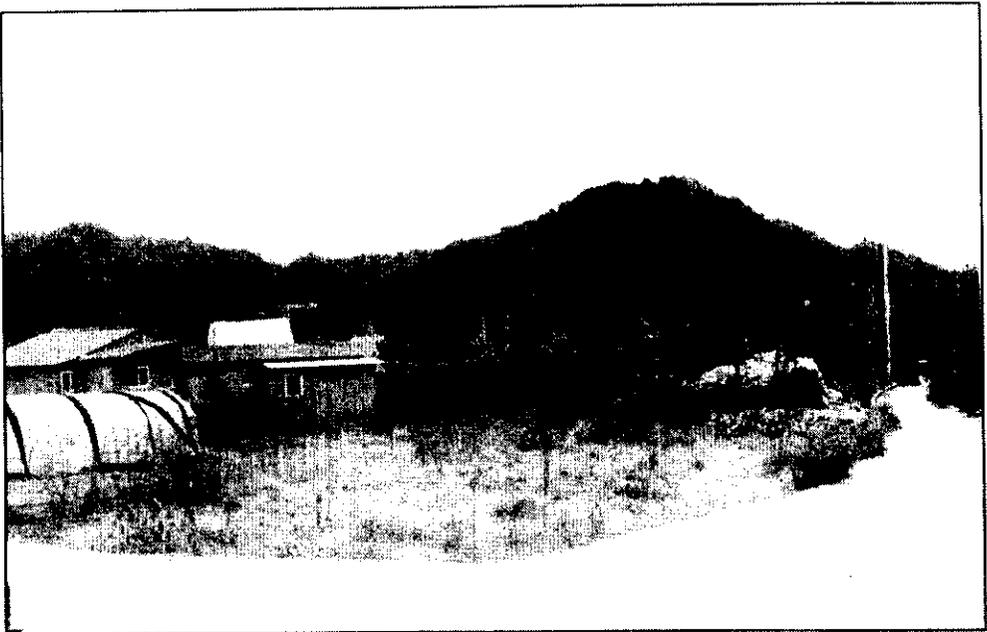
4. 관련법규

- 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③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위치도



□ 현장전경



## 관 련 법 규

###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④ <삭 제 99·1·21>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

③ ~ ⑤ <생략>

####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삭제 '95. 11. 18>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